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관련 12문 12답

□ 12문 12답 질문 목록

구분	질문 내용
Q1	부과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2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Q3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Q4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Q5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Q6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Q7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8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9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편하면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10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11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재산과표 5천만원 공제는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라면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1. 부과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번 개편은 가입자 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제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 종합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보수월액*, 보수 외 종합소득** * 개인 사업장 사용자: 사업소득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부분에만 부과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산정방식	소득 × 정률(6.99%)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납부자	보수월액: 사용자 50%, 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 (보험료 미부과)	없음 (모든 가족의 재산·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 그간, 재산보험료 부과 여부 등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 특히,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실제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미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해,
 - 국회에서 여·야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합의 하여, '17.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18.7월에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22.9월에는 2단계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Q2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 1단계 개편('18.7.1일 시행) 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77%)는 보험료가 인하(월평균 2.1만원),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월평균 6.6만원)되었습니다.
- 또한, 1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액의 형평성(카크와니 지수*로 측정)도 개선되었습니다.

※ Kakwani Index : K = DT(=보험료 집중도) - GX(=소득 집중도)	
○ 지니 계수를 기반으로, 소득의 집중도와 사회 보험료의 집중도를 비교하여 소득 대비 사회 보험료 부담이 누진적 혹은 역진적인지 측정	○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완전히 비례하여 부과된다면 0, 누진적이라면 양수, 역진적이라면 음수 ⇒ 카크와니 지수가 높을수록 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 시 개편 전 0.088에서 개편 후 0.136으로 상승(0.048↑)하였고,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0.099에서 0.182로 형평성이 개선(0.083↑)되었습니다.
-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측정 시 -0.046에서 0.011로 상승(0.057↑)하여 역진적 부과체계에서 형평적 체계로 개선되었습니다.

소득 모형		2016	2019	개편 전후 개선치	연평균 개선율
소득	전체	0.088	0.136	▲ 0.048	15.6%
	직장	-0.005	0.048	▲ 0.053	101.6%
	지역	0.099	0.182	▲ 0.083	22.6%
소득+재산	지역*	-0.046	0.011	▲ 0.057	100.4%

*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지역가입자만 산출

- 건강보험료의 소득 비중은 전체 보험료 중 93.27%로 상승하였고,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41.3%에서 53.4%(21년)로 상승하였습니다.

* 소득부과율 =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금액/전체 보험료에 대한 부과금액 × 100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비중>

(단위 : %)

구분	소득			재산			전월세			자동차		
	세대수	점수	비중	세대수	점수	비중	세대수	점수	비중	세대수	점수	비중
2021.12	8,502	2,590	53.42	3,892	1,992	41.09	1,261	148	3.05	1,331	118	2.44
2016.12	2,015	1,370	41.33	3,524	1,558	47.00	2,508	175	4.95	2,981	211	5.97

Q3.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과표 5천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2억원 상당)을 일괄(기본)공제*하고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 '22)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9,500원, '22)로 변경합니다.
 -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22년 기준)을 보험료로 부과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 또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23.11월 시행)입니다.
 -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며,**
-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 * 1단계('18.7월 ~ '22.8월) 30% → 2단계('22.9월 ~) 50%
-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Q4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6만원 이하(15만원→11.4만원)되는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대폭(2.4조원) 줄어들게 됩니다.

○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연 소득 336만원 이하)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242만 세대(월평균 4천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22.2월 기준) >

구분		변동세대	월 평균보험료 증감
지역가입자	인하	561만 세대 (65%)	△ 3.6만원
	인상	23만 세대 (3%)	+ 2.0만원
	무변동	275만 세대 (32%)	-

○ 특히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7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1.5만원 감소(5.9만원→4.4만원)합니다.

-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며,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합니다.

*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 (개편 前) 523만 세대(60.8%) → (개편 後) 329만 세대(38.3%)

- 또한,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90% 이상 감소(2,898억원→280억원)하게 됩니다.

※ 보험료 부과대상 차량 수 : (현행) 179만대 → (개편 후) 12만대

□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2%, 약 45만명) 보험료가 평균 5.1만원(33.8만원→38.9만원, 가입자부담분 기준) 인상됩니다.

□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3만 명(피부양자 중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4.9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예정

Q5.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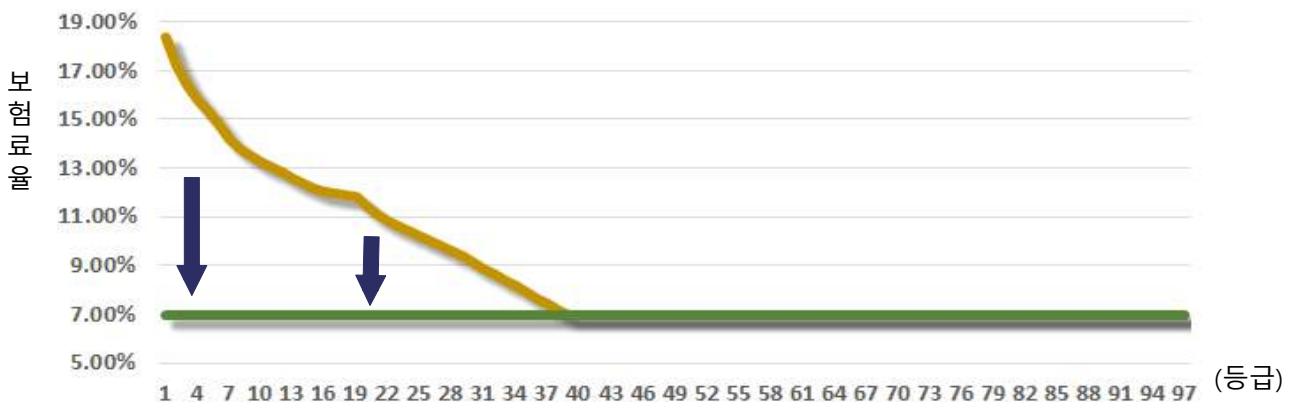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부과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이 있습니다.
 - *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로 직장가입자에 해당
- '21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 명, 전체 가입자의 27.7%)이며,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노인세대(26.3%), 장애인(7.6%),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6.3%), 만성질환자(3.1%) 등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나 보험료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보다는 부담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Q6.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는데 그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 현행 등급제는 등급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등급별 지역가입자 소득대비보험료율(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 사례 :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월 보험료 43,400원 감소

(현재) 소득 22등급(637점) 해당, 637점 × 205.3원 = 130,770원 (637점을 보험료율로 환산 시 10.5%)

(개편 후) (소득 1,500만원 ÷ 12개월) × 6.99%(22, 보험료율) = 87,370원

- 이로 인해,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훨씬 커,

* 1단계('18.7월 ~ '22.8월) 30% → 2단계('22.9월 ~) 50%

-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으며, 연금소득 4,1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4.2%(8.3만명)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Q7.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저보험료**는 소득과악률 한계 등으로 유지되었던 평가소득의 폐지, 소득 정률제 도입, 재산보험료 부담완화 등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해주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1차 부과체계 개편('18.7월) 시 도입되었습니다.
- 이번 2차 개편으로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9,500원(월 소득 28만원 기준)은 현재 직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14,650원 /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19,500원
-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므로,
 -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 또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저보험료 대상자는 이러한 취약계층보다 부담능력이 있다는 점 등 고려
- 다만, 최저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이며,
 - * 경감 미적용 시, 보험료 인상 세대(242만 세대)의 평균 인상폭은 4,084원
 - **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 최저보험료 인상분 경감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8.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되는 이유와 연금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현재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 연금·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1단계 전(~'18.6월) 20% → 1단계('18.7월~'22.8월) 30% → 2단계('22.9월~) 50%

□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되어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키므로,

*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나,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6.99%, '22년 기준)을 보험료로 부과

○ 연금소득자 대부분(90% 이상)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현재보다 감소***합니다.

*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 없음, 연금소득 연 4,100만원 이상인 4.2%(8.3만명)는 보험료 상승 예상

<연금·근로소득 월 보험료 변동 예시>

구분		평가소득	월 보험료	비고
1,500만 원	현행(30%)	450만 원	소득 12등급(245점) 245점 × 205.3원 = 50,290원	▼ 6,610원
	개편(50%)	750만 원	(750만 원 ÷ 12개월) × 6.99% = 43,680원	
2,500만 원	현행	750만 원	소득 15등급(371점) 371점 × 205.3원 = 76,160원	▼ 3,350원
	개편	1,250만 원	(1,250만 원 ÷ 12개월) × 6.99% = 72,810	
3,500만 원	현행	1,050만 원	소득 18등급(507점) 507점 × 205.3원 = 104,080원	▼ 2,150원
	개편	1,750만 원	(1,750만 원 ÷ 12개월) × 6.99% = 101,930	
4,500만 원	현행	1,350만 원	소득 21등급(609점) 609 × 205.3원 = 125,020원	▲ 6,040원
	개편	2,250만 원	(2,250만 원 ÷ 12개월) × 6.99% = 131,060원	

Q9.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편하면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 다만, 보수(월급) 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원(월 167만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 이 경우,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대다수(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직장가입자(2%,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됩니다.
- 현재의 직장가입자도 은퇴나 실직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을 합리화한다면 직장가입자도 나중에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유형별 어느 일방의 부담이 증가한다기보다는 부담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조정자에 대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23.11월)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Q10.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습니다.
 -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19년):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 한국 0.95명('22년)
 - 타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및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시,
 - * 현재,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100만원(개편 후 연 소득 336만원)부터 보험료 부담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 기준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높은 물가 상승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률('21년 말 대비) : (두바이유) 54%, (옥수수) 29%, (밀) 36% 등
 - ** '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 [IMF] ('21.10월) 4.9% → ('22.1월) 4.4% → ('22.4월) 3.6%
[OECD ('21.12월) 4.5% → ('22.6월) 3.0%
 - **국내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월) 3.6%, ('22.3월) 4.1%, ('22.5월) 5.4%

Q12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이 있어,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98년~).
- 그러나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조정제도 악용사례 >

-
- 프리랜서 B는 수입('18년 579백만원, '19년 97백만원, '20년 81백만원)이 있어 3년간 월평균 보험료 1,492,260원이 부과되어야 하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확인된 소득내역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 월 보험료 0원으로 감소(△월 1,492,260원)
-

- 이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도 적용하여,
 -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 '22.9월 조정자부터 적용하며 '23.11월부터 정산
- 이러한 지역가입자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통해 실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부과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